

반월자이 더 파크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공가) 입주자 모집공고



■ 「반월자이 더 파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방지를 위해 사이버 분양사무소(xi.co.kr/bwt)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반월자이 더 파크」 분양사무소 방문 안내

- 분양사무소 방문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정입니다.(p.30 참조)

■ 분양사무소 방문시 입장 제한 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또는 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는 경우

■ 「반월자이 더 파크」는 분양 상담전화(☎ 1660-387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많은 상담전화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우선 등을 통한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구)임대주택법에 의하여 2015년 06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이며, 임대임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분양전환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 및 부적격에 의한 공가잔여 일반세대 118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국민주택이며, 2021년 06월 모든 기금을 상환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2.09.23.)입니다. (청약 자격조건: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해당제한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화성시청 주택과-55267호(2021.12.22.)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06.23.)」 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혼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동일국가 체류여부 및 체류목적 무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1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6회 이상)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1순위/24개월, 24회 이상) ※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자	필요 (1순위/24개월, 24회 이상)	필요 (1순위/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제26조2의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를 대상 주택수의 5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xi.co.kr/bwt)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 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 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중복 청약접수 및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 시행에 따른 중복 당첨자 처리기준에 의거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함.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정하는 분양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잔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0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주택(세대)개방	서류 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화성시)	기타지역					
일정	2022.10.04.(화)	2022.10.05.(수)	2022.10.06.(목)	2022.10.07.(금)	2022.10.14.(금)	2022.10.15.(토) ~ 2022.10.22.(토)		2022.10.25.(화) ~ 2022.10.27.(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 (당첨자에 한함)	분양사무소 내방 (방문예약제)	분양사무소 내방 (방문예약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 파크 ※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 파크 108동 102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무소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 창구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후 잔여세대(공가)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 후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전 세대 내부를 확인(주택(세대)개방일 p.30 참조)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난방,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서류 반출일은 사업주체의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거주했던 임차인이 설치한 부합물(기타 시설물)은 사업주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22196호(2022.09.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 파크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2~19층, 8개동, 총 468세대 중 우선 분양전환 등 350세대를 제외한 118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1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완료 후(2022년 10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민 주택	2022000641	059.9340A	59A	59.9340	24.8360	84.7700	30.7208	115.4908	40.0580	16	1	1	3	4	0	7	0
		059.6792B	59B	59.6792	25.7396	85.4188	30.5902	116.0090	39.8877	11	1	1	2	3	0	4	0
		059.9131C	59C	59.9131	24.8404	84.7535	30.7101	115.4636	40.0441	12	1	1	2	3	0	5	0
		075.9277A	75A	75.9277	25.2780	101.2057	38.9188	140.1245	50.7477	9	1	1	2	2	0	3	0
		075.6745B	75B	75.6745	26.4003	102.0748	38.7890	140.8638	50.5785	7	1	1	2	2	0	1	0
		075.8529C	75C	75.8529	25.8047	101.6576	38.8806	140.5382	50.6977	7	1	1	2	2	0	1	0
		084.8878A	84A	84.8878	24.7349	109.6227	43.5117	153.1344	56.7364	12	1	1	2	3	1	4	0
		084.7320B	84B	84.7320	25.0721	109.8041	43.4318	153.2359	56.6322	21	2	2	4	5	1	7	3
		084.9085C	84C	84.9085	24.3785	109.2870	43.5222	152.8092	56.7502	23	2	2	4	5	1	9	1
합계									118	11	11	23	29	3	41	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타입	대상세대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잔금 (2022.12.27)
		동	호수			
059.9340	59A	101	203, 304, 504, 604, 704, 804, 904, 1003, 1103, 1203, 1504	255,662,000	30,000,000	225,662,000
		102	303, 703, 1004, 1204, 1304			
059.6792	59B	101	302, 802, 1002, 1502	255,489,000	30,000,000	225,489,000
		102	902, 1202, 1302, 1402, 1602, 1702, 1802			
059.9131	59C	101	601, 701, 1701, 1801	255,586,000	30,000,000	225,586,000
		102	501, 701, 1001, 1301, 1401, 1601, 1701, 1801			
075.9277	75A	103	203, 204, 1003, 1103, 1204	317,676,000	35,000,000	282,676,000
		104	703, 803, 1304, 1404			
075.6745	75B	103	202, 702, 1102, 1502	317,702,000	35,000,000	282,702,000
		104	502, 602, 902			
075.8529	75C	103	1101, 1201, 1301	317,856,000	35,000,000	282,856,000
		104	201, 301, 1001, 1101			
084.8878	84A	105	901, 1701	352,821,000	40,000,000	312,821,000
		106	203, 403, 603, 803, 1003, 1303			
		107	503, 603			
		108	903, 1403			
084.7320	84B	105	602, 802, 1302, 1402, 1602	352,525,000	40,000,000	312,525,000
		106	102, 402, 602, 802, 1402, 1702			
		107	102, 502, 1002, 1902			
		108	102, 402, 702, 902, 1002, 1102			
084.9085	84C	105	203, 1003, 1503	352,585,000	40,000,000	312,585,000
		106	501, 701, 801, 1001, 1101, 1201, 1401, 1601, 1701, 1901			
		107	101, 201, 701, 1901			
		108	501, 601, 901, 1101, 1201, 1401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 청약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4동 201호, 108동 102호 2개 호실은 2022.12.27.(화) 이후 입주 가능합니다.(그 외 세대 약정일 전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후 잔여세대(공가)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 후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난방,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주택가격)에는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동·층·호별로 구분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며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체결 전 「주택법」에서 정한 5년차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체결 이후 5년차 하자보증기간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 발생)
- 본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공급금액(주택가격) 중 계약금은 계약시 납부, 잔금은 별도 납부일자 고지를 생략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안내되는 잔금계좌로 잔금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관리비예치금은 관리소 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세대)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A	59B	59C	75A	75B	75C	84A	84B	84C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1	-	-	-	-	-	1	-	
		서울특별시	-	1	-	-	-	-	-	1	
		인천광역시	-	-	1	-	-	-	-	-	-
	국가유공자		-	-	-	1	-	-	-	-	1
	장기복무 제대 군인		-	-	-	-	1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	-	-	-	1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1	1	-
	소계		1	1	1	1	1	1	1	2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1	1	1	1	1	1	1	1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50%)		-	-	-	-	-	-	-	1	1
	소계		1	1	1	1	1	1	1	2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2	2	2	2	2	2	4	4	
생애최초 특별공급		4	3	3	2	2	2	3	5	5	
노부모 특별공급		-	-	-	-	-	-	1	1	1	
합계		9	7	7	6	6	6	8	14	14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

	<p>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 분에 한해 주택소유로 보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p>특별공급 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불법 행위자(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됨.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단,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7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함. (단, 해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해당기관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청 복지과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청 복지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청약통장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 당첨자 선정방법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인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추첨]

-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일부개정]에 의거 다자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지역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함.
 - ① 미성년 자녀수(태어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2)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09.23.(금)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당첨자 선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② 세대주일 것
 - ③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순위별 자격요건 ▶ 거주지역 ▶ 당첨자 선정 순차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 당첨자 선정은 ①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 ③ 일반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④추첨 순으로 공급합니다.
-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구분	내용	
선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5% 범위) : 2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② 세대주일 것
 - ③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09.23.(금)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00% 초과~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 당첨자 선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소득기준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분.

▣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자격 요건	거주구분
1순위	①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세대주일 것 ③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 화성시 거주자 • 기타지역 : 경기도(화성시 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2순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 유의사항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미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으로,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 및 재당첨 제한기간에 따라 본 아파트에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 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순위 ▶ 거주지역 ▶ 당첨자 선정 순차 ▶ 추첨]

- 당첨자 선정은 ① 순위별 자격요건,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 ③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④추첨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축 세대 구분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동별, 층별, 향별, 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과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 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구분	내용	
선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

구분	내용
무주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 세대구성원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p>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p>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로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최하층의 주택 배정 신청자는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와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당첨 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에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지급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이 취소된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IV

청약신청

■ 청약신청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2.10.04.(화) 09:00~17:30 ※분양사무소 : 10:00~14:00(정보취약계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또는 모바일 방문청약(정보취약계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반월자이 더 파크 분양사무소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화성시 거주)	2022.10.05.(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또는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2022.10.06.(목) 09:00~17:30		
	2순위	2022.10.07.(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 접수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 접수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신청 접수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시」. 단, 미동의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자 일반공급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6:00)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0.14.(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소(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0.14.(금) ~ 2022.10.23(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0.1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자격확인 서류제출

■ 자격확인 서류제출

구분	제출기간	대상	장소
서류제출	2022.10.15.(토) ~ 2022.10.22.(토) 10:00 ~ 17:00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일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 파크 108동 102호(분양사무실) ※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 예정

※ 서류제출 접수건수의 과밀로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당첨자별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분양사무소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표1]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시 당점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대리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점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불인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1.01.01부터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분양사무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로써 증빙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자용)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적용례 : 2011, 2013, 2015, 2018,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음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주택소유여부 판단(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잔여세대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A유형(주택형)	100	200(경쟁)	100	X	X	
B유형(주택형)	100	200(경쟁)	80	X	20	잔여 20세대 주택소유 인정
C유형(주택형)	100	50(미달)	30	50	20	잔여 70세대 모두 주택소유로 보지 않음
D유형(주택형)	100	50(미달)	50	50	X	잔여 50세대 주택소유로 보지 않음

※ 경쟁발생 여부 판단은 주택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초 정당당첨자는 경쟁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주택소유로 봄

VI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대상	장소
계약체결	2022.10.25.(화) ~ 2022.10.27.(목) 10:00 ~ 17:00	당첨자 중 자격확인 완료자	• 분양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 파크 108동 102호 ※ 방문예약제로 운영 예정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도장 생략
	○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기재금액 : 1억초과10억이하 15만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계약금)	우리은행	1005-604-265568	지에스건설(주)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잔금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 상이하하며, 향후 모계좌[우리은행 1005-604-265568 예금주:지에스건설(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및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서'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입니다.
 - ① 기재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이하 / 납부세액 : 15만원
 - ②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합니다.
 - ※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동산거래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거래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잔금 납부약정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로 확인한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에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리비에치금은 관리소 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 계약자는 잔금납부약정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각 세대별 거주했던 임차인이 설치한 부합물은 사업주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세대)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금액(잔금)을 납부약정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고,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국도4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위치한 방음벽은 반월자이 더 파크의 공유시설물이며, 해당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도로점용료의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주택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세대)개방

- 일반 관람세대 개방일정 : 2022.09.24.(토) ~ 2022.10.01.(토) / 개방시간 : 10:00~17:00
- 당첨자 해당세대 개방일정 : 2022.10.15.(토) ~ 2022.10.22.(토) / 개방시간 : 10:00~17:00
- ※ 사전 예약제로 운영 예정입니다.
- ※ 지정된 주택(세대)개방일과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주택(세대)개방일정 및 예약시간 외에는 방문하실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세대)개방일 방문 완료 후 재방문은 불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세대)개방일 방문시 아래에 해당될 경우 입장에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②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③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④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 방문시 지참물 : 신분증(당첨자)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자 불참 시 직계가족이 대리 참석 가능 → 신분증(당첨자),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개별 인테리어 공사 및 이사짐 인양 등 사적인 행위는 잔금 납부 완료 이후에 키를 인수하신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세대)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X 기타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청진동)	110111-0002694

■ 분양사무소

분양문의	분양사무실 위치	홈페이지주소
1660-3877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 파크 108동 102호	http://xi.co.kr/bwt